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8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김현기 의원(1명)
찬 성 자: 구미경, 김용일, 김용호,
김태수, 소영철, 이승복,
이종태, 임춘대, 홍국표,
황유정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중요 사항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총괄부서’와 ‘주무부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제2호~제3호)
- 나.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재정 운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관이”를 “기관의”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도·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하
며,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 “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 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 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 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 영, 성과계약, 재정 운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출자· 출연 기관이 장은 경영 합리화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 --- 기관의 -----

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생략)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명 이내

③ ~ ⑦ (생략)

제11조(지도·감독)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 말
한다. 이하 같다)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
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주
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2조(정의)에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제11조(지도·감독 등)제2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주무부서 협의의무를 규정¹⁾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협의규정은 통상 비용 미수반] 해당규정은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규정은 통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비용수반요소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